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0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주철현·민형배·김진표

홍성국 · 조오섭 · 우원식

서삼석 · 김원이 · 허 영

신정훈 · 서동용 · 윤준병

이병훈 · 소병철 · 김회재

의원(15인)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 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따라 1일 발생량 300kg 이상일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

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제5조).
-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 라.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음(안 제14조).
- 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 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을 말한다.
- 3. "수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수산 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 4.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 5.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 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 6.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7.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특

-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 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 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 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 2. 연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실적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 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 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 수 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의 매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시자는 제1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산부산물을 처리한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 제14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수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수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5조(휴업과 폐업의 신고)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하다)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내 수산부산물 배출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재활용센터의 기능 등)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

행한다.

- 1. 수산부산물의 가공·처리·보관
-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 3.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 4.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 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재활용센터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지간에 영업을 한 자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 고 배출한 자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자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